

매립지등 임차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① 성명		② 생년월일	
	③ 주소		전화번호	

1. 신청에 관한 사항

임차 희망지	토지소재지 (잠정지번)	지목	임차면적 (㎡)	④ 임차기간	㎡당 임차료 (원)	임차총액 (원)
⑤ 임차대상 자격	[] 영농조합법인 [] 농업회사법인 [] 기타					
⑥ 임차목적						
사용개시 연월일						

2. 신청자 소유농지에 관한 사항

토지 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㎡)	가격(천원)

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지등의 임차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
------	----	-----	----

매립지등 임차신청 안내	
제출 및 처리기관	사업시행기관(단체)
작성방법	①란에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. ②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③란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지 주소를,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. ④란은 임차기간을 5년 이내로 적습니다. ⑤란은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를 참고하여 임차대상 자격을 적습니다. ⑥란은 농지, 농업 관련 부대시설(구체적 용도) 등 구체적인 임차목적을 적습니다.
근거법규	○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4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)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않는 매립지·간척지·개간지·취토장(取土場: 쓸 흙을 파내는 곳)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(이하 "매립지등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·처분한다. 1. ~ 4. (생략) ② ~ ⑤ (생략) ○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14조(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) ①·② (생략) ③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④ ~ ⑦ (생략)

처 리 절 차	
---------	--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